

Vol. 7

2026.07. 15.

Customs & Trade News

HANJOO CERTIFIED CUSTOMS AGENCY



HANJOO

T. 02-2017-2212

F. 02-545-1682

W. <http://www.hjcustoms.co.kr>

통관 통합 운영사업부 안만복 부대표 mbahn@hjcustoms.co.kr

통관 요건 물류사업부 박주경 부대표 jpark@hjcustoms.co.kr

통관 요건 물류사업부 이수빈 전임 sblee2@hjcustoms.co.kr

CONTENTS

- I. 법령 개정사항
- II. 입안 예고
- III. 조세심판사례
- IV. 품목분류 변경고시
- V. 관세 및 FTA관련 동향

I. 법령 개정사항

1. 「식물방역법」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식물검역 누락을 방지하고 외래병해충 유입에 따른 국내 농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식물 수입 시 우편물이나 탁송품의 외부 포장 및 상업서류에 정확한 품명 기재를 의무화함. 또한 국내로 불법 반입된 식물검역대상물품 등 금지품의 양도 및 유통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아울러 무역항 및 공항 등의 시설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식물검역 정보를 안내하도록 의무화하고, 식물검역기관의 장이 운송인에게 승객과 승무원을 대상으로 한 식물검역 안내 및 교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사전 검역 관리를 강화함. 그 밖에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의 행정처분 요건에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2) 시행일

26.06.16.

I. 법령 개정사항

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6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7월 31일까지로 1개월 연장함. 아울러 최근 천연가스 가격 급등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12원에서 10.2원으로 낮추어 적용함.

(2) 시행일

26.07.01.

I. 법령 개정사항

3.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

(1)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는바,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시행일

26.06.23.

I. 법령 개정사항

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해 원산지간이확인물품을 신규 지정(한-필리핀 협정 17개 품목)하고 한-UAE CEPA를 대상 협정에 추가하여 원산지소명서 등 제출 서류 간소화 혜택을 부여함. 또한, 해외 통관애로 해소지원을 위해 체약상대국의 소급발급 기준 증명 시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개선함. 아울러 관세법 제327조 개정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으로 관련 용어를 정비함

(2) 시행일

26.06.30.

II. 입안예고

1. 「대외무역법 시행령」 입안 계획

(1) 입안이유

중소기업·중견기업의 통상조약 등 활용 및 통상환경대응 지원사항과 국가 안보 위협 등 수출·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사유가 추가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

(2) 주요 내용

가.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 및 협의 절차 보완(안 제 6 조)

나. 협정관세 적용 현황 및 활용실태와 관련된 관세청 통계자료 제공 요청범위 규정(안 제 12 조의 4)

다. 통상활용지원기관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 규정(안 제 12 조의 5 ~ 제 12 조의 7)

(3) 의견수렴기간

26.07.27.

Ⅲ. 조세심판사례

1. 특수관계가 수입물품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합리적 기준(제 6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한 처분의 당부

(1) 주요내용

가.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 판매자(미국 및 영국 소재)로부터 버번 위스키 등 주류(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과거 2014년 선행 관세조사 당시 일부 물품에 적용되었던 조정 계수(국내 도매판매가격 대비 수입가격 비율 6.41)를 쟁점물품 거래가격에 지속적으로 적용하여 신고함.

나. 처분청은 관세조사를 통해 청구법인이 매년 객관적인 제3자 벤치마크(TP Study)를 수행하지 않고 과거의 특정 계수를 장기간 적용하여 수입가격을 고정한 것은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여 과세가격 결정의 제 1 방법을 부인함.

다. 이에 처분청은 제 6 방법(합리적 기준)을 적용하여 3 개의 비교대상업체 마진을 차감하는 산식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결정하고 관세 등 합계 000 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함.

(2) 결정요지: 비교대상업체 재산정에 따른 경정 및 나머지 심판청구 기각

처분청의 선행 관세조사 결과를 쟁점물품에 대한 공적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자의적인 기준으로 수입가격을 고정한 것은 특수관계에 의한 영향으로 보이므로 제 1 방법을 부인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다만, 제 6 방법을 적용할 때 처분청이 선정한 3 개 비교대상업체는 취급 품목의 차이 및 재무수치 신뢰성 부족 등의 사유로 부적절하므로, 합리적인 기준을 통해 비교대상업체를 재산정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3) 결정일

26.06.10 (조심2025관0017)

IV. 품목분류 변경고시

1. 의료용 열소독기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구분	내용
품명	WASHER DISINFECTOR; 46-5-502
물품 설명	의료용 제품을 열소독하는 기기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HS CODE	- 변경 전 : 제 8422.20-0000 호(기본세율 8%) - 변경 후 : 제 8419.20-0000 호(WTO 세율 0%)
변경 사유	온도의 변화에 따라 의료용 제품을 열소독하는 기기이므로 제 8419.20-0000 호에 분류(2026 년 제 3 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26.06.23.

IV. 품목분류 변경고시

2. GAS GENERATOR 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구분	내용
품명	GAS GENERATOR; Evatros-G; R.KOREA
물품 설명	필터 등을 이용한 질소가스 발생기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HS CODE	- 변경 전 : 제 8479.89-9099 호(기본세율 8%) - 변경 후 : 제 8421.39-9099 호(기본세율 8%)
변경 사유	기체 여과기에 해당하므로 제 8421.39-9099 호에 분류(2026 년 제 3 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사항)

시행일

26.06.23

IV. 품목분류 변경고시

3. Other squid, frozen 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구분	내용
품명	Other squid, Frozen
물품 설명	로리고(Loligo)속의 창꼴뚜기
HS CODE	- 변경 전 : 제 0307.43-2090 호(조정관세 22%) - 변경 후 : 제 0307.43-2010 호(조정관세 22%)
변경 사유	속명의 변경은 생물 분류학적 관점에서 해당 어종의 학명이 수정된 것에 불과할 뿐, HS 품목분류 체계의 변경에 기인한 것이 아니므로 로리고(Loligo)속의 창꼴뚜기이므로 제 0307.43-2010 호에 분류(2026년 제 3 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26.06.23.

IV. 품목분류 변경고시

4. Membrane 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구분	내용
품명	Other articles of plastics ; MEMBRANE, 300MM TITAN PROFILER 5-ZONE
물품 설명	반도체 제조장비인 CMP 헤드에 장착되는 멤브레인
HS CODE	- 변경 전 : 제 3926.90-9000 호(WTO 세율 6.5%) - 변경 후 : 제 8486.90-2090 호(기본세율 0%)
변경 사유	반도체 제조장비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제 8486.90-2090 호에 분류(2026년 제 3 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26.06.23

Ⅳ. 품목분류 변경고시

5. 피크닉 매트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구분	내용
품명	Camping goods; 미니언즈 피크닉 매트; PR.CHNA
물품 설명	방직용섬유로 만든 피크닉 매트
HS CODE	- 변경 전 : 제 6306.90-2000 호(기본세율 13%) - 변경 후 : 제 6307.90-9000 호(기본세율 10%)
변경 사유	방직용 섬유로 만든 그 밖의 제품에 해당하므로 제 6307.90-9000 호에 분류(2026 년 제 3 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26.06.23

IV. 품목분류 변경고시

6. Handle JK 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구분	내용
품명	Handle JK ; T300 vehicle(아베오), lever type ;
물품 설명	잭(jack)과 연결하여 사용하는 Handle
HS CODE	- 변경 전 : 제 7326.90-9000 호(기본세율 8%) - 변경 후 : 제 8431.10-0000 호(WTO 세율 0%)
변경 사유	잭(jack)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제 8431.10-0000 호에 분류(2026 년 제 3 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26.06.23

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1. 미국,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일부 인하

미국 정부는 6월 1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제232조 관세조치를 개편하는 포고령을 발표하였다.

이번 개편은 일부 산업기계와 농업용 장비 등의 관세율을 인하하고, 미국산 철강 사용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일부 품목을 제232조 관세 대상에 새롭게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게차·불도저·트랙터 등 일부 이동식 산업기계는 미국과 관세협의를 체결한 한국 등에서 수입되는 경우 제232조 관세율이 기존 25%에서 15%로 인하되며, 그 외 국가에서 수입되는 경우에는 기존 25%의 관세율이 유지된다.

* 관세인하 대상국: 한국,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일본,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대만, 영국 및 EU 회원국

기존에 25%의 관세가 적용되던 농업용 장비와 공조설비(HVAC system) 등은 관세협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15%의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해당 관세 인하 조치는 미국 현지시간 기준 2026년 6월 8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미국산 철강을 사용한 파생상품에 대한 저율관세 적용 요건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미국산 철강을 95% 이상 사용한 품목에 대해 10%의 관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미국산 철강 사용 비율 요건이 85% 이상으로 낮아졌다.

기존 제232조 관세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알루미늄 인쇄판과 철판은 새롭게 관세 대상에 포함되어 25%의 제232조 관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관세 인하가 예상되는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품목 규모가 약 2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였으며, 향후 관련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여 구체적인 적용 내용과 영향을 검토하고, 미국의 무역법 제301조 조사, 무역법 제122조 관세 및 무역확장법 제232조 품목관세 등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미국과의 우호적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2. 한-세르비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타결

- 반도체·전기차·자동차부품 관세 철폐 및 신속통관 규범 도입

한국과 세르비아는 반도체·전기차·자동차부품 등 주요 수출품의 관세 철폐와 시장개방, 공급망·핵심광물·AI·바이오 분야의 협력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을 타결하였다.

한-세르비아 CEPA는 우리나라가 발칸 국가와 체결하는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양국은 품목 수 기준 90.2%, 수입액 기준 96% 이상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하였다.

세르비아는 반도체·전기전자 제품에 부과하던 최대 25%의 관세를 철폐하고, 전기차·하이브리드차 시장을 개방하기로 하였다. 자동차부품 전 품목의 관세도 즉시 철폐되며, 라면·조미감·인삼·커피믹스 등 K-푸드와 화장품, 의료기기·의약품 등의 시장 접근도 확대될 예정이다.

세르비아산 리튬·코발트·니켈·흑연·희토류 등에 대한 관세는 즉시 또는 5년 이내 철폐된다. 이를 통해 이차전지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핵심 원자재의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쌀, 과일, 육류, 유제품 등 국내 민감 농축산물에 대한 시장개방은 최소화하였다.

자동차·전기전자·기계류·가공식품 등 주요 품목에는 역외산 재료를 폭넓게 허용하는 원산지 기준을 도입하였으며, 원산지증명은 기관발급과 자율증명을 모두 허용하여 기업 부담을 완화하였다.

통관 분야에서는 일반 수입물품은 도착 후 48시간 이내, 특송물품은 6시간 이내 반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신속통관 규범을 도입하였다. 온라인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차단 등 지식재산권 보호 규범과 기술규제 사전 통보 및 시행 전 6개월의 유예기간도 마련하였다.

양국은 공급망·에너지·핵심광물뿐만 아니라 AI·보건의료·바이오·교통·물류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정부는 향후 법률 검토와 협정문 번역, 정식 서명, 경제적 영향평가 및 국회 비준동의 등 협정 발효를 위한 후속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3. 한-몽골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제5차 공식협상 개최

- 상품양허·원산지·투자·경제협력 등 15개 분야 협상 진행

한-몽골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을 위한 제5차 공식협상이 6월 8일부터 11일까지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협상에는 우리 측 권혜진 통상교섭실장과 몽골 측 바트후 이데쉬 경제개발부 사무차관을 수석대표로 양국 협상단 약 40명이 참석하였다.

한-몽골 CEPA 협상은 2023년 12월 개시된 이후 2024년 11월까지 총 네 차례 진행되었으나, 몽골 측 사정으로 일시 중단되었다. 이후 양국은 올해 3월부터 협상 재개를 논의하여 1년 7개월 만에 제5차 공식협상을 개최하였다.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양허, 서비스, 투자, 원산지, 경제협력 등 총 15개 분야를 중심으로 주요 쟁점을 논의하고 협상 진전을 가속화하였다.

한국은 제조·기술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몽골은 리튬·구리·희토류 등 핵심광물 부존량이 풍부한 자원국으로, 양국은 산업·교역 구조 측면에서 상호 보완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한-몽골 CEPA를 통해 우리 기업의 신흥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핵심광물 공급망의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4. 무역위,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 향후 5년간 4.93%~8.41%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정경제부에 건의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6월 18일 제474차 회의를 개최하여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의 덤핑 수출로 국내 동종 산업에 시장점유율 하락과 영업이익 감소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정하고, 향후 5년간 4.93~8.41%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하였다.

조사대상 물품은 정제한 구리로 만든 외경 66.68mm 이하, 두께 0.20mm 이상 2.50mm 이하의 이음매 없는 동관으로, 에어컨·냉장고 등 가전제품과 공업용 열교환기, 냉난방 및 공조시스템 등에 사용되며 HSK 제7411.10-0000호에 해당한다.

최종 덤핑방지관세율은 Hong Kong Hailiang Metal Trading Limited와 그 관계 회사 및 그 밖의 공급자에 4.93%, Fine Metal Technologies Public Company Limited와 그 관계회사에 8.41%로 결정되었다.

해당 물품에는 2026년 3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 3.64~8.41%의 잠정덤핑 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무역위원회는 이번 의결 결과를 재정경제부에 건의하고 태국 정부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